

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
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. 8. 31. 성명중의원 외 4인
- 나. 회부일자 : 2007. 8. 31.
- 다. 상정일자 : 2007. 9. 6.(제13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회의)

## 2. 제안설명(제안설명자 : 성명중 의원)

### 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 조항을 적합하게 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「지방자치법」의 전문개정에 따라 해당 규정의 근거법규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된 법 규정에 맞게 조정함.(안 제1조 등)

- 제1조(목적)
  - 「지방자치법」 “제 63조” 를 “제 71 조” 로
- 제14조(회의에 관한 선포)
  - 제2항 중 “제55조제1항” 를 “제63조” 로
- 제77조(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)
  - “제71조” 를 “제 79조” 로
- 제89조(징계의 요구와 회부)
  - 제1항 중 “제78조” 를 “제86조” 로, 제3항 중 “제75조” 를 “제83조” 로 한다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상학)

○ 제천시의회 회의규칙에 대하여 2007. 5. 11일 「지방자치법」 법조문 일부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법 조문을 일치 시키기 위한 것으로 법적 행정적으로 제반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### 4. 질의답변 요지

“ 없 음 ”

### 5. 소수 의견

“ 없 음 ”

### 6. 토론 요지

“ 없 음 ”

### 7. 심사결과

“ 원안가결 ”

### 8. 심사보고 불임서류

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